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23215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4. 1.

판결 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92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555,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3. 10.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게 우정사업본부는 2007. 3. 20., 국토교통부는 2010. 10. 8. 투자일임계좌(Wrap Account)의 개설 및 운용을 각 위탁하였고, 한편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A은 2010. 1.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원고가 우정사업본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0. 21.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계좌에 2011. 6. 14.자로 매수가 281,705,096원으로 편입되어 있던 드림허브시피제5차시피(이하 '이 사건 시피'라고한다)를 국토교통부의 투자일임계좌로 매수가 286,858,028원에 편입한 후, 이 사건 시피를 2011. 10. 25. 피고 B 명의의 금융투자종합계좌로 170,178,083원에 매도하고, 다시 2011. 10. 26.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계좌로 매매가 287,057,754원에 매도하였다(이하 '피고 A의 불법행위'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2015. 7. 7.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869호). 라. 원고는 2014. 8. 18. 국토교통부에게 피고 A의 불법행위로 국토교통부가 입은 손해배상으로 136,630,7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내에서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배상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2014. 8. 18. 국토교통부에게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6,630,7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배상을 한 경우 초과 배상된 금액은 공동면책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시피의 매수가 286,858,028원과 매매가 170,178,083원의 차액 116,679,945원(원고는, 이 사건 시피의 매도로 인한 손해액은 국토교통부의 매수가가 아닌 이 사건 시피의 매도일인 2011. 10. 25. 당시 이 사건 시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287,017,809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일인 2011. 10. 25. 당시 이 사건 시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287,017,809원임을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시피의 매매일인 2011.10. 25.부터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배상한 2014. 8. 18.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원고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447,077원(= 116,679,945원 × 5% × 1,029/365,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합계 133,127,022원(= 116,679,945원 + 16,447,07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배상에 의한 공동면책금액은 133,127,022원이다.

(2) 한편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A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거들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A의 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충당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A이 2015. 7.6. 피고를 위하여 6,100만원을 공탁하자 원고는 2015. 7. 13.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및 공탁금에 딸린 이자 합계 61,001,169원을 출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2015. 9.2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보증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탁금 및 보험금을 피고 A의 구상금 채무에 아래와 같이 각 변제충당하면 2015. 9. 24. 현재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는 28,925,362원이다(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배상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A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 A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의 위 공탁금 및 보험금은 원고가 국토교통부에 배상한 금액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면책된 당일부터의 법정이자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최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상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탁금의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6,018,070원(= $133,127,022\text{원} \times 0.05 \times 330/365$ (2014. 8. 18. ~ 2015. 7.13.})과 원고의 배상액 54,983,099원(= 공탁금 61,001,169원 - 지연손해금 6,018,070원)에 각 충당하면 구상금은 2015. 7. 13. 기준으로 78,143,923원(= $133,127,022\text{원} - 54,983,099\text{원}$)이 남는다.

② 보험금의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781,439원(= $78,143,923\text{원} \times 0.05 \times 73/365$ (2015. 7. 14. ~ 2015. 9. 24.))과 원고의 배상액 49,218,561원(= 보험금 50,000,000원 - 지연손해금 781,439원)에 각 충당하면 구상금은 2015. 9. 24. 기준으로 28,925,362원(= $78,143,923\text{원} - 49,218,561\text{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8,925,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과 공모하였거나 자신이 피고 A에게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대여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다52854 판결 참조).

(2)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5, 6,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1. 10. 24. 원고 회사에 금융투자종합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고 A은 피고 B의 위 계좌가 개설된 다음날인 2011. 10. 25. 이 사건 시피를 국토교통부의 투자일임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금융투자종합계좌로 매도한 후 다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계좌로 매도한 사실, 피고 B은 2011. 10. 27. 피고 A의 위와 같은 매도로 실현된 수익금을 자신의 금융투자종합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그의

아들인 C의 권유로 원고 회사에 금융투자종합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이 사건 시피의 매도로 실현된 수익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에 이체한 사실, 위 금융투자종합계좌 및 국민은행계좌는 모두 C이 사실상 관리하였고 C은 피고 A에게 위 수익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금융투자종합계좌가 피고 A의 불법행위에 이용된다거나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과 공모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